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063번
- 제 안 자 : 김호평 의원 (찬성자 9명)
- 제 안 일 : 2019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결과만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를 기관 감사한 지적사항과 결과는 보고하고 있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외부기관 감사결과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현황 및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호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9.10.25. ~ 11.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결과와 외부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u>조치결과</u>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u>최종 조치결과</u>

- 서울시를 기준으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개념상으로는 지방의회, 중앙정부, 감사원등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어, 외부감사는 중앙정부 및 감사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헌법」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는 정보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써 가능한 것이며,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바 있음.

헌법재판소 판례 (1989. 9.4. 88헌마22)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 감사결과 공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결과만 공개되고 있고, 감사원 또는 정부부처의 감사결과는 감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바,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감사결과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시민을 시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서울시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외부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과 법령 및 정보공개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외부감사 보고도 감사보고의 원칙에 따라 적시성이 요구되나,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사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호 및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의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감사기준」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 감사결과는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개정 목적과 같이 서울시 내부적인 개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의회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상 오류를 제거 및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한편,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행정을 개선 및 발전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감사결과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의무사항과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내부감사 결과와 함께 외부감사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통합 공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2. 경영 성과와 재무 현황
3.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결과
4.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